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투자권유대행인의 보수교육 제도 개선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정량평가 중 유용성 평가 대상에서 투기등급을 제외)
- 다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(전문인력의 보수교육 주기 등 제도 개선)
- 라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전문인력의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중 일부 개정)
- 마.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(자산대사 적용범위 명확화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2/4/14 개정 · 2023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전문인력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전문성과 윤리식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함
 - 투자권유대행인은 2년마다 보수교육(온라인 10시간)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관련 자격 효력 정지
 - 개정된 자본시장 법규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시 적절한 교육 필요
 - 2021년 금융투자업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인력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수교육 제도 개선 등 금융투자업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 제기

2) 주요 내용

- 보수교육 주기 단축(제2-20조 제4항)
 - 보수교육 주기를 (기존) 2년 → (개정) 1년으로 단축
 - 법규 · 윤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을 (기존) 10시간/2년 → (개정) 6시간/1년으로 확대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2/4/20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2022년도 ‘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’ 시행을 위하여 신평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후 신용평가회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(4.12)한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평가 개선방안을 해당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신용평가회사 평가위원회는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에 따라 역량평가 기준 등의 관한 심의 기능(구성: 학계 1인, 연구원 1인, 금투업계 5인)

2) 주요 내용

□ 정량평가 중 유용성 평가 대상에서 투기등급을 제외(별지 제60호)

- 투기등급은 등급의 변동성이 높고 사업환경 변화시 유용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등급변동의 예측가능성 보다 등급조정 적시성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음
 - 신평사가 투기등급 종목에 대해 적시에 등급을 조정하기보다 등급전망·등급감시를 인위적으로 부여하고, 추후에 등급을 조정함으로써 지연되는 부작용이 초래
- 유용성 평가 대상을 전체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 변경

다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(2022/4/14 개정 · 2023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개정된 자본시장 법규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주기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〈보수교육 현황〉

- ▷ 전문인력은 2년마다 자격별(8종)로 보수교육을 이수(온라인 10시간)하여야 하며, 미이수 시 관련 자격 효력 정지
 - 투자상담관리인력 및 '최소자기자본 1억 투자자문사 투자권 유자문인력'은 매년 이수
- ▷ 1인이 다수의 전문인력 등록 시 위계에 따라 상위 보수교육만 이수(단,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제외)
 - 투자자산운용사 > 금융투자분석사 > 위험관리전문인력 >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> 증권투자권유자문인

* 최근 2년간(20~21년) 약 17만명이 보수교육 수료

2) 주요 내용

□ 보수교육 주기 단축

- 보수교육 주기를 (기존) 2년 → (개정) 1년으로 단축
- 법규·윤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을 (기존) 10시간/2년 → (개정) 6시간/1년으로 확대
 -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

라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2/4/19 개정·2023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」 개정(2023.1.1 시행)과 관련하여 자율규제위원장에게 위임된 전문인력 보수교육 실시시간, 유예사유 등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전문인력 보수교육 주기 단축

- 법규·윤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을 확대
 - (기존) 2년마다 10시간 이상 → (개정) 1년마다 6시간 이상
-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중 일부 개정
 -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 이수자: (기존) 20시간 이상 → (개정) 12시간 이상
 - 단, 투자상담관리인력(매년 10시간 이상) 및 '최소자기자본 1억 투자자문사 투자권유자문인력'(매년 20시간 이상)의 보수교육은 현행대로 유지
 -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

마.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(2022/4/6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산대사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2021년 4분기 자산대사 과정에서의 업계 건의사항 반영을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자산대사 적용범위 명확화(제3.1.4조~제3.1.6조)

- (기존) 공매도 등을 위해 차입한 경우의 자산대사 방법만을 규정
 - 대용·대차한 증권에 대한 자산대사 대상 여부 및 미수금, 증거금, 현물환 등 현금성 자산의 대사 대상 범위 명확화 필요성 제기
- (개정) 증권의 경우 차입·대용·대차보유 증권 모두 대상에 포함하며, 미수금·증거금·현물환은 대상에서 제외
 -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 및 기준가격·확인 업무(자본시장법 제23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2조 제2항) 고려 시 해당 현금성 자산에 대한 자산대사 실익 부족

□ 자산 분류 방법 일부 변경 및 추가(제2.1.1조, 제2.6.1조, 제3.8조, 제3.10.9조 등)

- (기존) 유무형자산인 미술품 및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자산 분류의 명확화 필요성 제기
- (개정) 유형자산 소분류에 미술품, 무형자산 소분류에 탄소배출권을 추가

□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대사 방식 수정·보완(제2.4.1조, 제2.4.3조, 제2.4.6조, 제3.6.1조, 제3.6.5조, 제3.7.2조)

- (파생상품) 장내파생상품은 계약금액 대신 계약수로 동일성을 확인하고, 스왑은 매수포지션 기준으로만 자산대사
 - 스왑은 단일 포지션(예를 들어 매수)으로 대사하여도 충분한 경우에 해당 (예외: 주식스왑 등 양방향 포지션 대사가 적합한 상품의 경우 매도, 매수포지션 각각 대사하는 방식도 허용)
- (환매조건부 매매) 환매조건부 '매수'만 자산대사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